구분 관련규정 공제금 내역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§7의4 ∙ 중견･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･중소 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- 지급기한 15일내 지급금액 × 0.5% - 지급기한 16일∼30일내 지급금액 × 0.3％ - 지급기한 31일∼60일내 지급금액 × 0.15％ \* 세액공제한도：법인세의 10% 대･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조특법§8의3 ∙ 출연금액 × 10% -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\* 적용시 유의사항(표하단) 조특법§10 일 반 기 업 중 소 기업 신성장･원천기술연구개발비 ×최대 30\* %〔20%＋(수입 금액 대비 신성장 R&D 비중 × 3배)〕 \*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%(25%+α) 신성장･원천기술연구개발비 ×최대 40%〔30%＋(수입 금액 대비 신성장 R&D 비중 × 3배)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×최대 40% [30%+ (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&D 비중 × 3배)]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×최대 50% [40%+(수입 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&D 비중 × 3배)] 위 해당･선택 않은 경우 ①･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 × 25% ② 당해연도 R&D비용 × [기본 0%＋(매출액 대비 R&D 비중 × 1/2배\* 〕 \* 최대 2% 위 해당･선택 않은 경우 ①･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발생액 초과금액 × 50% ② 당해연도R&D비용×25% \*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공제율 단계적 인하 - 중소기업 졸업이후(유예 기간 포함) 3년간 15%, 그 이후 2년간 10% ※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(’13.1.1.이후 개시 과세연도) ①･②중 많은 것 선택 ① 직전년도 발생액 초과금액×40% ② 당해연도 R&D비용×8% ☞ 중견기업(조특령§9③) 1. 중소기업이 아닐 것 2.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업종 3.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4.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미만